

투자권유준칙(규정)

Ⅰ. 총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 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 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 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성상품” 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상품” 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 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투자권유” 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9조제4항
- 3) “포트폴리오투자” 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금소법 제18조 제1항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상품

※ 참고사항 2-1

▶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

①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②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③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 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 (조건부 자

본증권)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 ④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 ⑤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인버스 ETF 포함) 다만, 금소법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 ⑥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금소법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
- ⑦ 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 제 1항 제 3호)

금소법 감독규정 11조(적정성원칙)

① 영 제12조제1항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법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나 같은 법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나.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다. 연동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라.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될 것

2.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의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가. 제1호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라.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금투업규정 제4-21조)가 금소법상 대출성상품으로 분류되어 금소법 시행이후 적정성 원칙이 적용됨을 유의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7조제2항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4-1

▶ 법상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 등은 투자권유로 보기 어려움

5.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 2) 임직원 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5항 단서, 금소법 제2조제9호
-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법 제9조제5항제4호단서, 금소법 제2조제9호라
 - ※ 금소법상 “전문금융소비자”란 투자성상품의 경우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되며,
 - ※ 대출성상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경영여신업자, 대출성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자 등이 포함한다.

☞ 금소법 제2조제9호 및 금소법시행령 제2조제10항

III.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사항 6-1]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참고사항 6-1

▶ 임직원 등이 금소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적합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녹취 등으로 받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함

☞ 금소법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 제5호

☞ [위반사례 예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적합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투자권유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갖춰놓는 행위

▶ 일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춤형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위반 소지 <22.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에 대한 특칙 참조>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제4-77제5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금지

* 금전신탁계약 중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 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운용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파악 하여야 함)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 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일·(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4)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법 제124조제1항

5) 4)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 제124조제3항 및 제4항

6)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7.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8조 제1항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10. 및 12. 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2023.7.10 개정)

☞ 금소법 제18조 제2항, 금소법시행령 제12조

3) 임직원은 2)의 경우에, <별지 5>의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참고사항 7-1

▶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스스로 적정하지 않은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사항 10-1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IV.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IV-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 참고사항 8-1

▶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 방법 : 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직원이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투자자에게 확인 받는 방법도

가능함

▶ 온라인 펀드 거래시 : 온라인 거래시에도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상에 구축하여야 함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온라인 투자자들 중 투자성향이 확인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투자자가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단,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을 구축하여야 함

-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가 적정하지 않은 상품 거래를 원할 경우 경고 등을 하여야 함

- 회사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멀티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별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시하여야 함

-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추천펀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펀드의 선정주기·선정절차·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추천펀드 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 회사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서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제19-3-1조(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참조]

2)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3)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8-2

▶ 회사가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 위임 여부”를 기재

- 본 준칙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관련 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 등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에 따라 대리권의 확인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회사에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본인인 자녀로부터 수권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법정대리권이 있음이 확인되면 별도로 자녀에 대한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

4)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

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5)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장외과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2>의 “장외과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용)를 이용 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 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9-1
▶ 회사는 투자자정보의 변경 이외에도, 투자자의 이메일·전화번호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변경 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3)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9-2
▶ 유효기간의 만기가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기일 이후 최초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도록 함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제2호, 제4-78조의2제4항, 제4-93조제22호 및 제22의2호

IV-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2>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7조제3항

2)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소법 제17조제3항)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사항 10-1]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 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나. 유의사항: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참고사항 10-1

▶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음

-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상품 거래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는 것은 불가

[위반사례 예시①] 투자자의 최종 투자 의사 확인 전에 미리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상품 거래 확인” 서류 등을 받아두는 행위

[위반사례 예시②] 투자자에게 부적합 상품을 투자 권유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도록 하였음에도 투자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놓는 행위

▶ 임직원은 <별표 2>의 “투자자 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표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상품 거래 확인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판단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서)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투자성상품의 위험 등급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기재)

적합(적정서)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투자성상품의 위험 등급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24.03.01.개정)

투자자유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5) 임직원 등은 가)의 투자자에게 나)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4>의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 대상자: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 ELS, ELF, ELT, DLS, DLF, DLT

6)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거나 모든 개인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

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2호, 제2-3호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1)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1)에 따른 <별표 2>의 투자 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과 <별지 8>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만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2호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법시행령 제186조의2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 2>의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 기준 및 <별표 4>의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 적합성 분류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21조, 금소법시행령 제16조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 하는 행위. 다만,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

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2023.7.10 개정)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금소법 감독규정 제15조제2항

마. 투자성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금소법시행령 제16조제3항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3호,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4호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4항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금소법감독규정 제15조제5항

다.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 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참고사항 13-1

▶ 임직원 등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을 권유할 수 있음

▶ 임직원 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에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만 투자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됨 (예: 펀드에 대해서만 자문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만 필요)

-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자로서 자문하는 경우 ① 투자자의 보유자산 전체가 아닌, 해당 투자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합성 판단을 하고, ②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추가매수 또는 자산가치 변동 등으로 포트폴리오 가중평균위험이 변동되면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비율을 재조정하도록 안내 또는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4)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13-2

▶ “유사한 펀드”란 아래 기준에 따른 펀드를 말함

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한 계열회사 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②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한 계열회사 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 ① 및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중에서 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지역(국내·해외)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 하여야 함. 다만, 해당 펀드의 향후 전망, 운용 안정성, 판매전략 등을 감안하여 달

리 투자권유 할 수 있음

▶ 온라인 판매 시: 투자권유가 없는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열회사 펀드임을 표시 필요

13의2. 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1)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 거래 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음)

2)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확인서 징구건수, 확인서 징구건 중 민원발생 건수 등

☞ (참고)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현황 등은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주기, 공시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음

IV-3. 설명의무

14. 설명의무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별지 3>의 설명서 교부 및 금융상품 가입 확인서에 서명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금소법 제19조 (2023.7.10 개정)

2)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가. 대출성상품에 관한 계약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2항

4)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 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참고사항 14-1

▶ 금소법 제19조 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음. 즉, 설명의 정도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 및 투자자의 지식·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나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나 취약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으며,
-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투자자 등에게는 보다 간단한 설명이 가능할 것임. 유사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또는 지식수준에 대한 확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직원은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해당 상품에 대한 간략한 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해당 회사에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한 기록이 남아있거나 투자자가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한 경험 등을 이유로 간략한 설명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통해 파악된 투자자의 이해수준에 맞게 설명의 정도를 간략히 할 수 있을 것임

▶ 계속적 거래가 발생하는 단순한 구조의 상장증권(예: 주식, ETF 등) 및 장내파생상품(예: 선물옵션) 등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 투자권유 시마다 거래의 방법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최초 계좌개설 또는 투자권유 시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임직원 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

5) 임직원 등은 1)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법시행령 제132조제2호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법시행령 제132조제3호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4항, 금소법감독규정 제13조제2항

7)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3항

8) 임직원 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9조 제3항

9)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참고사항 14-2

▶ 고객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위험등급에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함. 다만, 외화 자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외화 자금 운용을 위해 외화MMF를 매수하는 등 환전에 따른 별도의 손익 발생 우려(환율변동 위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2023.7.10 개정)

15.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등 제도의 차이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

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참고사항 15-1

▶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헤지를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1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의 절차를 따름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 20%, 40%, 60%)하여 판매 할 수 있다는 사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15의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 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나.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바. 사채의 순위

2) 임직원 등은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별지 9>의 금융감독원 “조건부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기공일-00605, ‘15.8.5)” 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상품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6. 투자성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1) 회사는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및 [별지12]의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금소법 § 19①제1호나목3, 시행령(§ 13③) 및 감독규정(§ 12) (24.03.01.개정)

*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표3]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24.03.01.개정)

※ 참고사항 16-1

▶ 위험등급은 1등급이 가장 높은 위험이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짐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투자자유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의 <별표 3>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을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 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에게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 함

※ (예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를 3가지 색상(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 등 활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운영함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참고사항 16-2

▶ 포트폴리오 투자의 권유 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및 지식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투자자가 중간 정도의 위험-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 성향으로 분석되었고,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경험이나 지식수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옵션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될 수도 있음

VI.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7-①. 계약서류의 교부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금소법 제23조, 금소법시행령 제22조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금소법감독규정 제21조

3)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22조

4)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22조

17-②. 청약의 철회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별지 6>의 신청서를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17-② 및 17-③에서 '서면등' 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금소법 제46조, 금소법시행령 제37조

1)-① 다만, 투자성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17-②에서 '금전등' 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37조

1)-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참고사항 17-②-1

▶ 금소법상 “투자성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이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 계약, 비금전신탁을 말함

▶ 회사는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투자성상품에 대하여 7일(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이상 신규청약을 받지 않음

청약철회기간 부여 예시									
구 분	T	T+1	T+2	T+3	T+4	T+5	T+6	T+7	T+8
적용	신규가능	신규 불가(청약철회 기간)							발행일
비적용		신규 가능(청약철회 불가)							발행일

▶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약한 금전 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투자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이때, 회사는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7일 간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직접 서명 등의 방법으로 동의(확인)하는 회사와 투자자 간 개별약정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2023.7.10 개정)

※ (참고) 약관·계약서·집합투자규약 등에 “투자자가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확인)합니다”등의 문구를 미리 넣어 작성해 놓고 이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재화 및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수취한 보수·수수료 등을 반환하여야 함

1)-④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 신탁 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2)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금소법 제46조, 금소법시행령 제37조

2)-①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37조

2)-②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금소법 제46조

※ 참고사항 17-②-2

▶ 금소법상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의 상품을 말함

①신용거래 ②주식담보대출 ③ 청약자금대출

▶ 고객에게 제공한 대출성상품에 대해, 반대매매 등의 발생으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약 철회권 적용에서 제외됨

▶ 고객이 대출성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증권 매매수수료 등은 제외) 등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하며,

② 고객은 대출원금과 이자, 인지대 등을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

※ 고객과 회사는 반환 지연 시,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회사는 신용정보원 등에 연락하여 해당 투자자에 대한 대출기록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함

3)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금소법 제46조

4)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37조제7항

17-③. 위법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별지 7>의 신청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 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

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7>의 통지서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23조,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금소법감독규정 제31조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참고사항 17-③

▶ 금소법상 위법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투자성상품) : 회사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환매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위약금 성격) 등을 고객에게 요구 불가

- (대출성상품)

① 회사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위약금 성격) 등을 고객에게 요구 불가. 다만, 고객이 이미 납부한 인지대 등은 반환 불요

② 고객은 해지시점의 대출원금 및 발생 이자를 회사에게 상환 필요

▶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은 원칙적으로 해당상품을 매각한 금전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상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해당상품을 현상대로 반환할 수 있음

① 투자자가 개별의사 표시에 따라 해당 상품 그대로 반환을 원한 경우

18.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법 제55조

19.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 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 법 제71조,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

2)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감독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5호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9호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과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11호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 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 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 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 배분의 전략, 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다목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 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 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 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바목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아목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가목

아.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자.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참고사항 20-1

▶ “로보어드바이저”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의미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1)의 각 호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 법 제97조, 법시행령 제98

21.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

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어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법 제98조제1항, 법시행령 제99조제1항

22.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1) 임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1>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 금소법 제17조 제2항

- 2) 임직원 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22-1

▶ <별표 5> 투자유형에 따른 자산배분 Matrix 참조

-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22-2

▶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의 계약체결은 금융투자업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에 유의 (부적합 확인서 불가)

☞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 제26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소극적 맞춤형 조건*과 적극적 맞춤형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

*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조건 반영

** 투자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그에 적합하게 운용

- 소극적 맞춤형 조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형 조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로 한정*

* 투자자가 특정 종목, 섹터 등을 지정하여 편입, 운용토록 요청하더라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소극적 맞춤형 조건을 우선 반영하여 자기의 투자 유형을 직접 선택 하도록 할 수 있음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예시) >

투자자 유형 자산배분 유형	고위험 선호		저위험 선호	
	유형군1 (주식)	주식 1 주식 2	주식 3 주식 4	
유형군2 (채권)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BW 등)		초우량 회사채, 국채	
유형군3 (펀드)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형 펀드, 변동성이 큰 펀드		국공채형 펀드, 변동성이 작은 펀드, MMF	
유형군4 (이종자산)	주식, 파생상품,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 주식워런트, 원금비보존형 ELS (DLS), ELW, 이머징국가채권, 외화 주식		국채, MMF, 원금보존형 ELS	

* 회사채는 채권의 위험도(ex. 보증유무, 신용등급, 후순위채권 여부 등)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세부자산배분유형 분류

주식		채권		펀드	기타
국내	해외	국내	해외		
- 가치주 - 성장주 - 섹터주 - 대형/중소형주 - 코스닥주	- 선진국 - 이머징마켓 - 섹터 및 특정 지역 관련 주	- 국공채 - 회사채 - 하이일드채 - 후순위채 - 주식관련 사채	- 국공채 - 회사채 - 하이일드채 - 후순위채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재간접펀드 - 해외(선진/이머징)	- 구조화 상품 (원금보장/비보장) - 대체투자 등 (금, 원자재, 리츠 등)

* 주식의 경우 세부자산배분유형간 분류를 종목이나 발행기업 자본금 규모 등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고, 채권의 경우도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으며, 펀드의 경우 변동성 등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음

5)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2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1)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

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23-1

- ▶ 설명의무의 이행은 <별지 3> 의 설명서 교부 및 금융상품 가입확인서 양식을 활용하여 설명서 교부 및 설명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지 않는 상품 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

2)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23-2

- ▶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별지 10>의 예시를 참조하여 설명

3)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4.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자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법 제60조, 영 제62조제1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및 별표 12

2)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예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28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26조 (2023.7.10 개정)

3)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제3항

4)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 (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28조제3조, 제4조 및 금소법시행령 제26조제4항

25. 사모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 시 판매절차

1) 임직원 등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에 대한 투자(출자) 권유 시 설명의무, 광고규제,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금소법 제4장에 따른 판매규제 및 <별지11>의 판매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공동업무집행사원(이하 “공동GP” 라 한다)와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규약)에

필요한 금소법 제4장의 판매규제 준수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공동GP의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02.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0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12.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06.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10.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04.08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사항 중 제5조 ④항, 제 17조⑦, ⑧항의 개정 사항과, <별지 6호>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의 양식변경은 2014.06.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11.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03.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04.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07.04일부터 시행한다. (전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0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02.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02.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04.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07.20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사항 중 <별지11호>의 투자권유 유의상품 대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은 영 제 3조의 3 시행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07.06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사항 중 24조 판매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은 2021.09.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12.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09.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04.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07.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03.0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목차

- <별지1> 투자자정보 확인서(투자성, 대출성상품)
- <별지1-1>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대출성)상품 거래확인서
- <별지2>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
- <별지3> 설명서 교부 및 금융상품 가입 확인서
- <별지4> 적합성보고서
- <별지5> 적정성판단보고서(투자성, 대출성상품)
- <별지6> 청약철회신청서
- <별지7> 위법계약해지요구신청서, 위법계약해지요구관련통지서
- <별지8>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기준
- <별지9> 조건부자본증권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 <별지10>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 <별지11> 사모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 시 판매절차
- <별지12>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
- <별표1> 투자자성향분류표
- <별표2>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 <별표3>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 <별표4>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 적합성 분류기준
- <별표5> 투자유형에 따른 자산배분 Matrix 참조

<별지 1> 투자자정보확인서

투자자정보 확인서[투자성상품]



※ 본 확인서는 투자자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 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향후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일반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전문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체크 시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 규제가 적용됩니다)	
취약 금융소비자 (개인만 작성)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고령투자자, 금융상품 가입 무경험자 등	
투자 권유 희망 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 <input type="checkbox"/> 미희망(일일형상품 체크 불가)	
투자자 정보 제공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제공 <input type="checkbox"/> 정보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미제공(적정성원칙 대상상품 체크 불가)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1. 투자권유 미희망, 투자자정보 미제공시 당사는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처분 경험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 및 부적합상품 권유 금지		
2.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당사는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3.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 금융상품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등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님의 귀속됩니다.		
* 본인은 상기내용을 설명 듣고 자필기재 하였습니다. 고객명(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명): _____ (인/서명)		
투자자 정보 확인		
개인 정보		법인 정보
연령	1. 연령 <input type="checkbox"/> 만1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만20~30세 <input type="checkbox"/> 만31~54세 <input type="checkbox"/> 만55~64세 <input type="checkbox"/> 만65세 이상	1-1. 총 자본금 현황 <input type="checkbox"/> 200억 이상 <input type="checkbox"/> 100억 이상~2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0억 이상~100억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이상~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미만
투자 예정기간	2. 투자하실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투자경험	3.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은행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 비보장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률추구 주식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신용거래 등	
	4.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input type="checkbox"/> 전혀없음 <input type="checkbox"/> 1년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이상	
	5.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input type="checkbox"/> 채무상환 <input type="checkbox"/>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 <input type="checkbox"/> 여유자금 <input type="checkbox"/> 자산증식	
	※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한 경험 (년 개월)	
금융지식 수준 및 이해도	6.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투자목적	7.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보존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원금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input type="checkbox"/> 손실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재산상황	8. 총 자산규모(순자산) <input type="checkbox"/> 1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2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2억~5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억~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이상	8-1. 연매출현황 <input type="checkbox"/>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0억~1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억~2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200억 이상
	9.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기대이익 및 손실수준	10. 기대이익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20%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30%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50%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0%범위	
	11.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20%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30%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50%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100%범위	
■ 제공 정보에 대한 고객 확인 1.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제공한 정보는 제공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유효하며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 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해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20 년 월 일 고객명(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명) : (인/서명) </div>		

<input type="checkbox"/> [금융상품지식 수준, 위험에 대한 태도]당일 재변경시 기재사항
부적합상품 가입을 위한 의도적 투자자정보 변경은 투자위험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음을 숙지하며, 사실관계 착오, 오류입력 등으로 기존 투자자정보를 변경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align-items: center;"> 고객명(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명) : (인/서명) </div>

위임장			
대리인 성명		대리인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상기 업무에 대한 제반 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align-items: center;"> 고객명 : (인/서명) </div>			

투자자정보확인서[대출성상품]

BNK 투자증권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고객이 신청하신 신용공여 상품이 적합·적정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일반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전문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체크 시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자자 정보 제공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규제공 <input type="checkbox"/> 정보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투자자 정보 확인		
개인 정보		법인 정보
대출용도	1. 신용거래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식 매수 <input type="checkbox"/> 주식 대주 1-1. 담보대출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매수 <input type="checkbox"/> 가계자금 <input type="checkbox"/> 법인 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령	2. 연령대 <input type="checkbox"/> 만 19 이상~3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31 이상~5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51 이상~64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65 이상~79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만 80세 이상	
투자경험	3. 자산규모 <input type="checkbox"/> 1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상	3-1. 총 자본금 <input type="checkbox"/> 5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00억원 이상
	4. 연간소득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 이상	
	5. 부채현황 <input type="checkbox"/> 1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상	
신용점수	6. 고정지출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억 이상 _____ 점 ※ 고객님의 신용점수는 신용약정 계약 체결 전 회사에서 추후 확인합니다. (법인 제외)	6-1. 연간 순이익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연간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변제계획	<input type="checkbox"/> 매도상환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임대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 ()	
■ 제공 정보에 대한 확인 1. 본인의 투자경험,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제공한 정보는 제공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유효하며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 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 줄 것을 설명 들었습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20 년 월 일 고객명(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명) : (인/서명) </div>		

위임장			
대리인 성명	대리인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상기 업무에 대한 제반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고객명 : (인/서명) </div>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상품 거래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 고객께서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 여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의 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처분 경험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 및 부적합상품 권유 금지
3.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 의무 : 금융상품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등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원칙* 대상 투자성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원칙(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 할 의무

투자하려고 하는 금융투자 상품명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자필 기재)

투자자 성향		금융투자상품 위험 등급	
--------	--	--------------	--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유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 하고,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__년__월__일

고객명(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명) : (인/서명)

위임장			
대리인 성명	대리인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상기 업무에 대한 제반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고객명 : (인/서명)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대출성상품 거래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대출성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 고객께서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대출성상품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 대출성상품은 원금 손실 또는 원금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대출성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성상품 종류	1. 신용거래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 <input type="checkbox"/> 주식대주 1-1. 담보대출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매수 <input type="checkbox"/> 가계자금 <input type="checkbox"/> 법인 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투자하려고 하는 금융투자 상품명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자필 기재)

투자자 성향	대출성상품 위험 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	-------------	------------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유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 하고,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대리인의 경우 대리인명) : _____ (인/서명)

위임장

대리인 성명	대리인 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상기 업무에 대한 제반절차의 수행을 위임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고객명 : _____ (인/서명)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 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비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	-------------------------------	--------------------------------	--------------------------------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외화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외화부채 총계 :
연간 수출총액 : 연간 수입총액 :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중 :	하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 드린 것 입니다.
2. 향후 OO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직 위)

(담당자)

(서명/인)

(법인명)

BNK투자증권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00회사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지점/부서명) (담당자) (서명/인)

<참고사항>

※ 예시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가 작성하는 양식이며, 만약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참고1]의 투자자 확인(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고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회사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조사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설명서교부 및 금융상품 가입확인서



(주)BNK투자증권은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참고하시어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위험 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투자자유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단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상품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 금융투자상품명 : _____

◆ 설명서 교부 및 설명내용 고객 확인 (회색 자필기재 및 부분 표시)

투자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전문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계약서류 교부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매직원으로부터 위 상품의 계약서류*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약관, <input type="checkbox"/> 설명서 (핵심(요약)설명서 포함) 를 받았음 * 해당 서류는 법령 및 당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일반금융 소비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 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상품의 투자위험은 6등급 중 _____ 등급 (_____ 위험) 으로 최대원금전액 손실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환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전문금융소비자 및 권유불원고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상품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니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input type="checkbox"/>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input type="checkbox"/> 요청 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취약금융소비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상품 가입에 대한 우선 설명*을 <input type="checkbox"/>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small>*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투자에 따른 주요위험</small>
<small>*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상품: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 수익자 예수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일부 담보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small>	
사모펀드 가입 고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 사모펀드 가입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요청(서면, 이메일, 문자 등) 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 함을 설명 들었음

20 년 월 일

고객확인	고객(본인)성명: _____ (서명)
	대리인성명: _____ (서명)

◆ 판매직원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상품 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상품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상품의 위험도, 최대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이 해당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 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은 투자자에게 위 상품의 설명서를 교부 하였음	
20 년 월 일	
판매자 확인	지점: _____ 직위 : _____ 이름 : _____ (서명)

<별지 4>

적합성 보고서

■ 고객정보	
고객명 :	계좌번호 :
■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 투자자 정보 확인서 결과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예) ○○○형은 투자성향입니다. ※ [별표1] 투자자 성향 분류표 참조하여 작성
투자권유 상품	(예) ○○증권 제×××회 파생결합증권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예) 고객이 상품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 ※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
핵심 유의사항	※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 하여야 할 사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손익구조 등)이나 불이익(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
■ 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등 필요사항 기재)	

<별지 5>

적정성 판단 보고서

■ 고객정보	
고객명 :	계좌번호 :
■ 고객정보 확인결과	
고객 정보	
고객 연령:	
투자 기간:	
해당 금융상품 이해도: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 수준:	
보유자산 등:	
위험에 대한 태도: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총 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이 유	고객성향에 비해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정함을 기재
■ 참고 사항	
<p>※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p> <p>※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일자 : 고객님의 성명 : 서명/인</p>	

※ 참고사항				
※(예시) ① () 개 항목 충족/미충족시 또는 ② 총점 () 점 이상/ 총점 () 점 이하 적정/부적정 해당여부는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름(아래 표 참조)				
고객 정보	적정성 판단 결과			미충족 사유
고객 연령: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투자 기간: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 수준: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보유자산 등: (연간 소득 및 부채 포함)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총 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총점()점	

청약 철회 신청서

■ 신청인 인적 사항

계좌 번호		계좌명	
주소	(☎)		
반환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본인명의계좌 기재)	

※ 반환신청계좌번호가 은행이체약정 미등록계좌인 경우 은행이체약정 신청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철회 대상

- (투자성상품)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성상품) 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등을 발송하고,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당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상품	<input type="checkbox"/> 투자성상품: 세부사항 기재 가능 <input type="checkbox"/> 대출성상품: 세부사항 기재 가능		
1) 계약서류 제공 받은 날	년 월 일	2) 계약서 체결일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 고객 확인사항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함” 자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성상품] 대출계약 철회 신청시,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의 전액상환이 완료되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함
※ [대출성상품] 철회의 의사표시 도달 전 담보대상 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인함
※ [투자성상품] 예탁한 금전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함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고객께서 당사에 대하여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님의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위법계약해지요구신청서



■ 신청인 인적 사항

계좌 번호		계좌명	
주소	(☎)		
반환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본인명의계좌 기재)	

※ 반환신청계좌번호가 은행이체약정 미등록계좌인 경우 은행이체약정 신청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대상 상품명	
계약체결일	
투자성상품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납부일: <input type="checkbox"/>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성상품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지급일:
계약해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참고자료	

■ 고객 확인사항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함” 자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확인함
---	-----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위법계약해지요구 관련 통지서

BNK투자증권

■ 통지 대상 인적 사항

계좌 번호		계좌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주소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 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고객확인 사항

-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객님의께서 당사와 체결한 위법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주)BNK투자증권

<별지 8>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본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 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2. 고령투자자의 정의

가.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나. 만80세 이상: 초고령투자자

- ▶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 고령투자자에 게 적용하는 판매 절차를 준용함
- ▶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함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가.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1) 대상: 각영업점 및 콜센터

2) 전담창구 운영

① 전담 상담사: 지점장(부서장)이 영업직 직원 중 책임자급 이상으로 1인 이상 지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고령투자자 전담창구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 ▶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내점 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창구를 이용하도록 먼저 안내해야 하나, 고객이 특정 직원과 상담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 창구의 수는 지점 규모나 인력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령투자자 이외의 투자자도 이용 가능
- ▶ 전담창구에는 나중에 고령투자자 또는 보호자와 분쟁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녹음·녹화 시설 등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 전담창구 배치직원은 다양한 고객층을 접해본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정 근무연한 이상의 직원을 배치

하는 것이 바람직

▶ 전담창구에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지점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팀장은 배제 필요

▶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자제

※ 사리분별능력은 아래 예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나.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 1) 본사 전담부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담당부서
- 2) 전담인력: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담당부서에서 1인 이상 지정
- 3) 전담부서의 업무: 고령투자자보호 정책마련, 판매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교육

다.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1) 대상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적정성원칙 대상상품’ (거래소 상장상품 제외)

▶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지칭

- ① 파생 상품: 장외파생상품
- ② 파생결합증권
- ③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 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 (조건부 자본증권)
- ④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 ⑤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인버스 ETF 포함) 다만, 금소법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
- ⑥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⑦ 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라.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 포함)

- 1) 상품개발 담당부서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보호 측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 2) 1)의 검토결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절 한 경우 그 사실을 설명서에 명시하고 회사 판매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가.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고령투자자 판매절차를 마련하고 임직원에게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 하여야 한다.

나.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1) 점검 부서: 감사부
- 2) 점검 시기: 영업점 정기 감사 (연1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반기1회)
- 3) 점검 항목: 판매프로세스 준수 여부 및 불완전판매 여부 전반

▶ 다음과 같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

- 고령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한 경우
- 과도한 신용거래가 발생되거나,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 최근 주문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 (예: 투자자성향 상향 등)이 있는 계좌
-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는 계좌

▶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판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 필요

▶ 조력자를 지정해둔 경우라면 조력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다.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고령투자자 대상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의 개최에 대한 광고물의 허위·과장정보 문구사용 금지 - 광고물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필수

라.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준수 사항

- 1) 사후모니터링 실시: 해피콜을 통해 판매적정성 점검
- 2) 고령투자자 상담일지 작성
 - ① 고령투자자가 신규로 계좌 개설을 위하여 내점 하는 경우 및 금융상품 가입 시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고령투자자 상담일지' 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계좌명의인이 고령투자자가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투자자인 경우에도 작성해야 한다.
- 3) 투자숙려기간 부여 및 판매과정 녹취
 - ① 대상 상품: 금융투자상품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2호)
 - ② 숙려 기간: 가입 익일부터 2영업일(숙려기간 동안 청약 불가)
 - ③ 녹취 범위: 투자성향 파악된 이후부터 판매 전과정 녹취
- 4) 지정인의 연락처 수집 및 가입사실 통보
 - ①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령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 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가입 사실을 문자로 발송 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가족(지인)의 동의 가있는 경우 가능하다.

구분	고객의 지정인 선정	지정인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고객·지정인 동반 내점	현장에서 직접 지정	현장 확인	동의서 징구
고객만 내점 (파출 포함)	고객이 지정인에게 지점 업무팀으로 유선연락 요청	지정인 여부 확인 녹취	동의서 녹취

- ② 문자발송 정보: 금융회사명, 고객성명, 상품가입일자, 가입상품명, 가입금액, 회사 연락처 등
- ③ 문자발송 시기: 상품가입 당일 또는 익영업일
- ④ 문자발송 및 확인 담당자: 금융상품 판매임직원

<문자 발송 예시>

안녕하십니까? (주)BNK투자증권입니다. *** 님의 가족(지인)이신 000님께서 **년**월**일 당사에 +++채권(상품명)에 000원을 가입(청약, 계약 등)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당사 ##지점 담당자***(전화번호)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 시 사전 확인

- ①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직 직원(지점장, 준법감시 담당자 등)이 투자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 하여야 한다.
 - * 준법감시담당자가 영업직원인 경우 업무팀 직원 확인 가능.
- ②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 (투자권유 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 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③ 관리직 직원이 사전확인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 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당사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판매직원의 권유절차가 적정한지 가입 체결 전 관리 직원이 사전 확인하여 완전판매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직 직원 확인 사항]

- 투자성향에 대해 설명하고 적합상품 권유 여부
- 상품설명 전 불이익 사항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 했는지 여부
- 상품설명 전 설명서를 교부 여부
- 상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여부를 확인 했는지 여부
- 투자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고 투자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 된다는 설명을 하고 이해여부를 확인 했는지 여부
- 투자성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여부를 확인 했는지 여부

※ 확인 결과 ‘부’ 에 해당하는 항목은 해당 내용을 재이행 후 확인하고 판매절차 진행

관리직 직원 확인: (인)

6) 초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

※ 초고령자 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 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 권유 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 자제 필요

- ① 투자권유 유의상품 권유 및 판매 자제
- ②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시 조력자 확인
- ㉠ 초고령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 초고령 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자 직원(지점장 또는 준법감시담당자)가 동석 또는 유선(파출)로 초고령 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초고령 투자자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가입 시 다음 중 선택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필수)

<input type="checkbox"/> 가족 및 지인 조력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상품 가입 과정을 설명 듣고 투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당사 직원 조력	가족 및 지인을 지정할 수 없거나 알리기 원치 않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지점장 또는 관리직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초고령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 한 상품이오니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및 조력자 확인 사항]

- 본인은 조력자와 동석(또는 유선)하여 해당 상품이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80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강화된 판매절차가 적용됨을 설명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 본인은 조력자와 동석(또는 유선)하여 해당 상품의 내용과 원금손실 위험 등 주요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조력자 확인 : _____ (인)

유선확인 :	고객과의 관계 :	연락처 :

※ 고령투자자 판매 참고 사항

구분		적용연령		대상 상품	내용
		고령	초고령		
상담일지 작성		○	○	모든 금융투자 상품	고령금융소비자가 신규로 계좌개설 및 상품 가입을 위하여 내점 하는 경우 판매 자가 상담일지 작성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판매 절차 확인서	지정인 연락처 수집	○	○		고령투자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령투자자의 신변 또는 건강 상태에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시에는 상품가입 사실을 문자발송 ※ 고객 및 가족(지인) 동의 필수
	지정인 문자발송	○	○	투자권유 유의상품	관리직 직원이 판매직원의 상담내용이 적정성 여부 사전 확인 후 판매
	투자권유 유의상품 권유 시 사전확인	○	○		
	초고령자 조력자 확인	-	○		
숙려기간 부여 및 녹취		○	○		높은위험 상품 판매 시 투자자 보호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①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예시: 부실금융기관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 받지 못합니다.
- ②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예시: 경영개선권고 등)에 해당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③ 본 금융상품의 만기는 장기(예시: 30년 이상)이며, 만기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환금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정기간(예시: 5년 등)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않습니다.
-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본 금융상품은 특약에 의거 파산절차, 청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외국에서 도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 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①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예시: 부실금융기관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 받지 못합니다.
- ② 본 금융상품의 만기는 장기(예시: 5년이상)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 ③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예시: 5년 등)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 ④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⑤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 **공통 유의사항**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 판단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금융상품은 ----신용평가, ----신용평가 등 으로부터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 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0>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 유의사항

1.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2.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운용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4.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합리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알고리즘의 수익성 및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비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일임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필요 시에는 투자운용인력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전문인력 개입관련 정책에 따라 “5.” 는 표기 생략 가능)

<별지 11>

사모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 임직원 등이 사모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1. 배경

- 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주로 중소, 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하여, 투자 성공 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임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회사는 투자대상,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 및 설명을 이행하여야 함
- 투자가 투자판단 시 “자기책임 원칙” 하에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강화함.

2. 판매절차

1) 일반 원칙 적용

- (금감원 행정지도 준용) 임직원 등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 시 금소법 제4장 중에서 설명의무, 광고규제,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모 신기술조합의 투자(출자)권유

- 출자(투자자) 자격: 제한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근거)
- 투자자의 유형 파악: 일반투자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신설
- 투자권유 제한: 금소법 제17조, 제18조에 의거 적합성, 적정성 원칙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투자자가 요청하면 원칙을 별도로 요청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함.
- 판매규제 적용: 일반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준칙의 IV.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판매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3) 설명

- (공동GP와의 계약서상(규약)에 판매규제 반영) 임직원 등은 공동업무집행사원 (이하 “공동GP” 라 한다)와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규약)상에 준수하여야 할 금소법 제4장 판매규제 등에 관한 내용(예시)을 반영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공동GP의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예시) 제00조(LP투자권유시 이행 하여야 할 사항)

① 증권사의 공동 GP가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권유 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4장의 (사모 집합투자증권)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설명서 사전 협의) 사모신기술투자조합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약서(규약), 설명서 등은 사전협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설명제공· 설명) 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출자)권유 시 금소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고, 이 설명서를 사용하여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및 교부하여야 한다.

*** (참고)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

- 금융상품의 내용, 투자위험(금소법 제19조)
- 수수료, 계약해지·해제(금소법 시행령 제13조)
- 증권의 환매·매매(금소법 시행령 제13조)
- 금융상품 구조, 기대수익 등(금소법 감독규정 별3)

※ 사모신기술투자조합 투자의 경우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가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전문투자자에 투자(출자) 권유 시 적합성,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을 확인 받아야 한다.

- (설명 이행확인) (일반, 전문)투자자에게 별지3의 설명서 교부 및 금융상품 가입 확인서 양식으로 투자위험도와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판매직원의 성명 직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고, 투자자에게 설명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계약 서류 제공

-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 (계약서(규약), 설명서 등)를 서면, 우편 (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세지 등으로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단, 법인전문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서류 제공 시 설명서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모신기술조합 투자(권유) 시 판매절차 관련 내부통제 강화

- (판매절차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금융소비자보호총괄기관은 임직원 등의 사모 신기술 조합 판매관련 업무가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 강화) 회사는 사모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12>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

I. 목적

□ 동 기준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 19, 시행령 § 13② 및 13③, 감독규정 § 12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1. 적용대상 금융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상품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신탁계약,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 「**금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을 제외한다.

* 연계투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 [관계법규] 금소법 시행령 § 13②

2.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하 ‘**판매회사**’)는 「1. 적용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는 투자성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 19①제1호나목3

□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감독규정 § 12②제3호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 참고사항 II 2-1

▶ **(적정성 검증 자료의 수취)** 판매회사가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위험등급 산정시 사용한 기초자료, 판단 근거 등을 제조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적정성 검증의 범위)**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사용한 기초자료로부터 동 가이드라인이 정한 기준

이 정하는 바대로 위험등급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 (기존 상품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방법) 판매회사는 기존상품의 적정성 검증 시기, 표본 선정 방법, 검증 결과 처리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상품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 기준 예시>

가. (적정성 검증 주기) : 분기말 기준으로 익익월 말까지 검증

나. (적정성 검증 대상 상품군) : 해당 분기에 결산이 도래한 개방형&추가형 펀드

※ 단 현재 판매를 중단하거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이체 형식으로 정액정립식 추가납입만 받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능

다. (적정성 검증 대상 상품군 표본 선정)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회사의 관련 전문 조직에서 판매금액, 위험도 변경 여부, 고객군, 고위험 상품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 다만 아래의 기준을 참고 가능

√ (판매금액) 검증 대상 상품군 중 연간 판매액이 높은 상위 ★%(단, 최소 20개 이상) 펀드

√ (위험도 변경) 해당 분기에 결산 후 위험도가 변경된 펀드

√ (고위험 상품)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펀드

√ (보호필요대상 투자자) 초고령층·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연간 판매액 최상위 펀드, 추천펀드 등

※ 상기 기준 외에도 랜덤하게 일부 상품을 추출하여 검증할 것을 권장

※ 이밖에 급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예: 주된 투자대상 자산에 30% 이상 부실(금융투자업규정 별표 제18호에 따른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부실)이 발생 하는 등)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재검증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품 제조업자는 검증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협조함

3. 위험등급 체계

-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위험

4. 위험등급 산정방식

-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 ①기초자산의 변동성, ②신용등급, ③상품구조의 복잡성,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⑤환매·매매의 용이성, ⑥환율의 변동성,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관계법규] 금소법 § 19①제1호나목3, 시행령 (§ 13③) 및 감독규정 (§ 12)

① 시장위험* 등급은 투자성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계(또는 그 이상)로 산정한다.

- *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

② 신용위험* 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

-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표1>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

구분	6등급(저위험)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고위험)
장기등급	국공채 등 ^{주1)} , AAA~AA-		A+ ~ A-	BBB+~BBB-	BB+~BB-	B+ 이하 또는 무등급
단기등급	A1		A2	A3	B 이하 또는 무등급	

1)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2)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

③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 「Ⅲ.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④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해외채권 등

-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3단계로 구분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기재한다.

*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

-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기재한다.
-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등급 상향)할 수 있다.

⑥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6등급인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

⑦ 판매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Ⅲ.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5. 위험등급 산정 시기

-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 및 환매가 가능한 상품(예: 개방형 펀드)의 경우 연 1회(매년 결산시점) 등급을 재산정한다.
 - 다만,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

6.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 판매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7. 위험등급의 표시·설명 방법

- 판매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한다.
 -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주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설명한다.
- 판매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계법규]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제2호

Ⅲ.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

1.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2. 집합투자증권

(1) 공모펀드

□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표2>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

<표 2>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

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상기 표에 정의된 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3>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표 3>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1등급 (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 (예)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사모펀드

-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
-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다만,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파생결합증권

- (종합등급)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표4>에 따라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표4>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 분*	MR1(고위험)	MR2	MR3	MR4	MR5	MR6(저위험)
CR1(고위험)	1	1	1	1	1	1
CR2	1	2	2	2	2	2
CR3	1	2	3	3	3	3
CR4	1	2	3	4	4	4

CR5	1	2	3	4	5	5
CR6(저위험)	1	2	3	4	5	6

※ 주: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 (시장위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 평가 세부기준(예시)

-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고,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5등급*을 부여
 - * 원금 부분보장비율 수준에 따라 등급 세분화(95% 이상 5등급, 90% 이상 95% 미만 4등급, 80% 이상 90% 미만 3등급)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 (기초자산의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 수준(예: 25%)을 초과하는 경우
 - (원금손실조건)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60% 이상)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 요건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예: 70%)
 -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 ※ 그밖의 판매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조정 가능

- 상장지수증권(ETN)은 1~2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한다.
 - * 기초자산의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 음의 배율로 연동, 해외지수·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 다만,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 (신용위험)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 <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주식워런트증권(ELW)은 1등급(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4. 지분증권(주식 등)

-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 비상장 주식은 1등급 상향한다.
- 해외거래소 상장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경고·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

5. 채무증권

- 발행사의 신용등급,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회사채*는 <표1>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
 - * 「자본시장법」 제4조③ 및 ⑦ 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
 -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위험등급을 0~2등급* 상향)하고,
 - * 예) 변동성이 큰 신흥국 통화로 투자되는 경우와 같이 환율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 등급 상향 가능
 -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기재한다.
 -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 전환 위험 등을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예: ELT)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
 -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
 -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 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④ 후단(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준용

7. 투자일임계약

-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6.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8. 기타

- 판매회사는 특정 투자성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IV. 보칙

- 이 기준은 '24.3.1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24.3.1일 이후 'II-5. 위험등급 산정시기' 에서 정한 재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투자자성향 분류표>

□ 투자성 성향 진단 배점

문항/답변	1번	2번	3번	4번	5번	비고
1번	1점(법인5점)	4점(법인4점)	5점(법인3점)	3점(법인2점)	2점(법인1점)	
2번	1점	2점	3점	4점	5점	
3번	1점	2점	3점	4점	5점	복수 답안 가능
4번	1점	2점	3점	4점	5점	
5번	1점	2점	3점	4점	5점	
6번	1점	2점	3점	4점	-	
7번	1점	2점	3점	-	-	
8번	1점	2점	3점	4점	5점	
9번	3점	2점	1점	-	-	
10번	1점	2점	3점	4점	5점	
11번	1점	2점	3점	4점	5점	

※ 점수 계산 방법

1번부터 11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0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 (예) 1번부터 11번까지의 합이 45점인 경우, 45점/50점 × 100 = 90점

□ 점수별 투자성향 등급

점수	성향등급	투자자 성향
80점 초과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60점 초과 ~ 80점 이하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 추구 ·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40점 초과 ~ 60점 이하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 할 수 있음
22점 초과 ~ 40점 이하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 적금보다 높은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 할 의향이 있음
22점 이하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대출성상품 적정성 판단

적정성	기타 요건
적정	-
부적정	개인 - 연령대 80대 이상, 신용점수 515점 이하

<별표2> 고객의 투자 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 투자성상품

구 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표 3>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투자 위험도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투자성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투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채권	B+ 이하 또는 무등급	BB-~BB+	BBB+~BBB-	A+~A-	RP, CMA 특수채 AAA ~ A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조건부자본증권 (신종, 후순위)	AA-미만	AA-이상				
CP/단기사채	C+이하 또는 무등급	B+~B-	A3+~A3-	A2+~A2-	A1	
파생결합증권	ELS ^(※1) DLS	원금비보장형 (최대원금손실률 20%초과)	원금부분지급형 (최대손실률 10%초과 20%이하)	원금부분지급형 (최대손실률 10%이하)		
		*2등급 중 주1기준에 따라 1등급 상향	*3등급 중 주1기준에 따라 1등급 상향			
	ELB ^(※2) DLB ELW	ELW		원금지급형 (만기1년 초과)	원금지급형 (만기1년이하)	
주식	신용거래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주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ETF/ETN	레버리지, 인버스ETF, ETN	ETF				

W r a p	주식형	국내주식형랩 (파생ETF편입 가능한상품)	국내주식형랩 (파생ETF편입 불가능한 상품)	공모주 하이일드 유형wrap	-		
	채권형 펀드형 지점운용형 ELS/DLS형 기타자산형	유형별 편입자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름 포트폴리오구성형식의 상품의 경우 개별상품의 위험등급을 상품별 편입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					
	자산배분형	편입자산의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름					

주1) 파생결합증권(ELS/DLS)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 1) (발행통화) 외화로 청약 및 상환되는 외화투자상품인 경우
- 2) (기초자산의 개수)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3) (기초자산의 종류)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 4)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 5) (원금손실조건) 낙인베리어가 일정수준 이상(60%)인 경우, 낙인베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경우 만기베리어가 일정수준 이상(70%)인 경우
- 6) (레버리지 여부)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2)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ELB, DLB는 위 표이 분류기준과 별개로 5등급(낮은위험)으로 분류

※ Wrap의 경우에는 해당 Wrap 내 편입상품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장외파생상품	주의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
	경고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위험	그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조가 복잡한 상품)

□ 집합투자증권(펀드)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투자 성향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위험등급		투자자산 기준	97.5% VaR*	
공격 투자형	1 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적극 투자형	2 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이하	
위험 중립형	3 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안정 추구형	4 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 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안정형	6 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 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별표 4>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 적합성 분류 기준

▶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권유 적합성 분류 기준을 정함.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 가. 금리스왑
-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 할 수 있다.

- 가. 금리. 통화 스왑
- 나. 옵션 매수. 매도
-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비상장 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투자위험도 분류”의 참고사항을 참조할 것

*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별표 5>

<투자유형에 따른 자산배분 Matrix>

구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주식 (ELW/ ETF)	관리종목	일반상장주식	-	-	ETF (채권)	
	투자주의종목 경고종목 위험종목					
	ELW,ETF(해외주식, 통화, 상품원자재, 파생형_레버리지& 인버스)	ETF(주식)				
채권 CP/ 단기 사채	B+ 이하 또는 무등급	BB+~BB-	BBB~BBB+	A+~A-	AAA ~ AA- RP, 특수채	국고채,통안채 지방채,보증채
	C+이하 또는 무등급	B+~B-	A3~A3+	A2+~A2-	A1	
펀드	파생상품펀드 특별자산펀드	주식형 인덱스형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BBB-이상 투자채권형, 혼합형	A-이상 투자채권형	AA-이상 투자채권형	MMF
파생 결합 증권	*2등급 중 주1)기준에 따라 1등급 상향	원금비보장형 (최대원금손실 률 20%초과) *3등급 중 주1)기준에 따라 1등급 상향	원금부분지급형 (최대손실률 10%초과 20%이하) *4등급 중 주1)기준에 따라 1등급 상향	원금부분지급형 (최대손실률 10%이하) 원금지급형 (만기1년초과)	원금지급형 (만기1년이하)	

주1)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주1)과 동일